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6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

발 의 자 : 정성국·엄태영·서천호  
이성권·곽규택·김 건  
김용태·김대식·김예지  
박충권·박정하·서지영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동소음 규제지역 외에 이동소음원에 따른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제60조제3항제5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u>≤신 설&gt;</u></p>	<p>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u>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li> <li>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4. 「초·중등교육법」 제2조</li> </ol>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② -----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동소음 규제지역 외에 이동소음원에 따른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  
-----  
-----.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  
-----  
-----  
-----

제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 10. (생략)

④ (생략)

제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1항·제2항-----  
-----  
-----  
-----

6.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